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날 짜 2015. 12. 09. (총 6 쪽)

보 도 자 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은 선택지에 없어 계약연장 선택할 수밖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 악용한 여론호도 중단해야

1. 정부·여당은 최근 몇몇 노동 관련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이하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설문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가 기간만으로 따른 계약종료와 비정규직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이를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2/7(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동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http://goo.gl/MQjZh9>)라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인용한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사주체,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82.3%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표1> 참고).

<표1>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2014. 12. 29. 고용노동부 자료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3. 이 설문조사는 주요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기간연장 관련 질문 등 여러 질문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뜻이 서술하고 있다(<사진1> 참고).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http://goo.gl/JHhhP3>)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가 기간제법 상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정규직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한다.

2.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이 2년 한도 내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횟수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3.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 할 수 없었거나 앞으로 계속근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4.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예: 최대 1년 또는 2년)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일 정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사진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질문지
 출처: <http://newstapa.org/22836>

4. 경향신문(<http://goo.gl/bBuwEs>)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월요일(12/7)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출입기자단에 대신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2. 기간제 근로의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

(질문)
 현행법상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 후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2> 2015. 11. 한국리서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중

이 설문조사도 응답자 71.7%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

를 내놓는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역시, 현행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제한적인 가능성 수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응답자가 현행 기간제법 상 규정인 정규직 전환이란 선택지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 계약 종료와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사진2> 참고).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선택지로 설문조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37753>)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5%가 정규직 직접고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찬성한 의견은 응답자의 20.5%, 기간연장 반대 의견은 15.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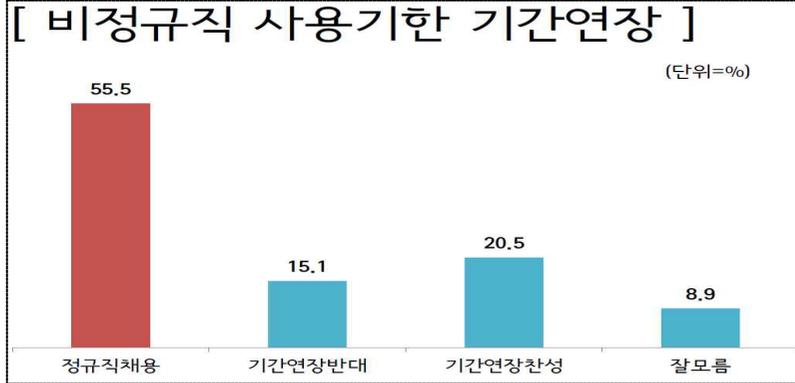
<표2> 참여연대 설문조사 질문지와 결과

Q11. [비정규직 기간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리라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기간연장]

(단위=%)



응답 항목	비율 (%)
정규직채용	55.5
기간연장반대	15.1
기간연장찬성	20.5
잘모름	8.9

5. 설문조사와 별개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수많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①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그런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과 이와 연동한 금전보상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표3> 기간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4조 2항)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개정안 4조 3항). 대통령령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외로 인해 기간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그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6.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태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종료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기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7.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http://goo.gl/AQSdL8>)에서 특정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왜 특정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처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와 기간연장 만을 물어본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